

의안번호	제6호
의결연월일	2022. 7. 29.

-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07. 14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 : 2022. 07. 14. 행정복지위원회
- 상 정 일 자 : 2022. 07. 21.  
제282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  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주민복지과장 : 정윤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강화하고,
-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제2항)

- 아동의 참여보장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제2항)
-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 개정  
(안 제12조제1항)
-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2조제3항)
-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
(안 제22조의2)

#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완호)

-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강화하고,
-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(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)에서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근거하여 정책추진을 강화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조례는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# 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없 음

#### 5. 토 론 요 지

○ 없 음

#### 6. 심 사 결 과

○ 「원안가결」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